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보상기준을 낮춰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제외대상중 총 피해면적기준 변경 (안 제5조제1항)

-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총 피해면적을 "1,000㎡ 미만인 경우"에서 "330㎡ 미만인 경우"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붙임
나. 예 산 조 치 : 당초예산 30,000천원 반영
- 소요예산 : 24,334천원 × 3 = 73,000천원 (2010년 피해신고기준의 3배)
- 추경에 확보 예정 : 43,000천원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라. 입 법 예 고 : 2010.12.13 ~ 2011.01.04(22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를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4. “농작물 등 피해보상” 이란 야생동물이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거”를 “따라”로, “지역 내에서”를 “지역에서”로 한다.

①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제6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동·식물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 내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등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4. "농작물등피해보상"이라 함은 동물이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8호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4. “농작물 등 피해보상” 이란 야생동물이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제3조(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생략) ②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가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1.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관계법령 발췌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